202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2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I 부패영향평가 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8
2. 부패영향평가 기준 ····· 10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 13
4. 2022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 17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26
1.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 28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34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39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3) 특혜발생 가능성 ····· 46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8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54

Ⅱ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58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61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 64
3.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66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8
5. 국가공무원법 ····· 70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73
1.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 76
2.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 78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80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3) 재정누수 가능성 ····· 88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90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Contents

Ⅱ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 102

1. 도서관법 시행령 ····· 104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106

(2) 공개성 ····· 109

1.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 111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114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16

(3) 예측 가능성 ····· 118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위한 법률 시행령 ····· 123
3. 사립학교법 시행령 ····· 126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129

II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 133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5
2. 교육공무원 징계령 ····· 137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0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143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146
1.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 148
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 152
3.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 155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 158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160
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2

III

참고자료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 166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175
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190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 193

202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2

I

부패영향평가 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 부패영향평가 기준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4. 2022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0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제도에 있어서 부패발생에 취약한 분야의 본질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2005. 12. 29.「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자료요청,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2 부패영향평가 기준 (영 제30조제1항)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 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며,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 침해,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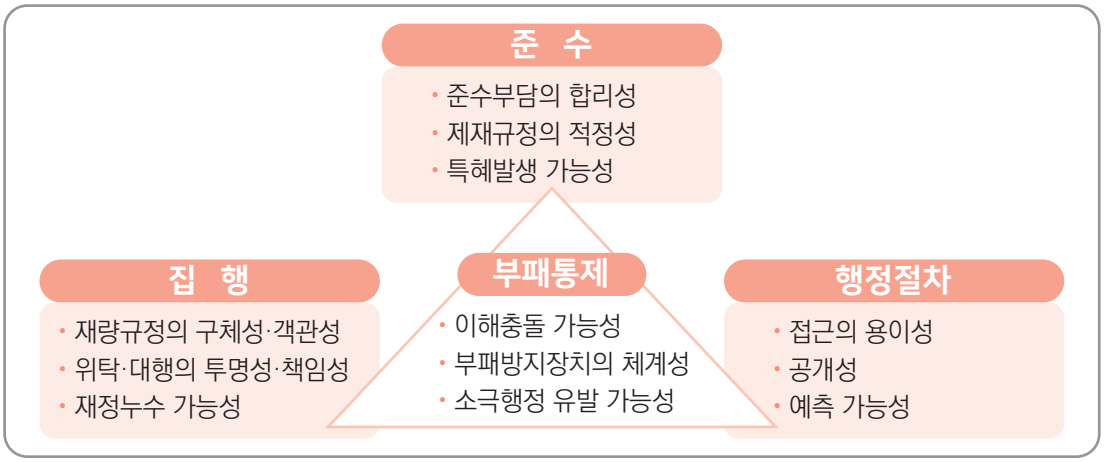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0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1. 부패영향평가 요청

1)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참고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

2) 평가요청 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이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 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공청회 자료, 연구 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1) 평가기간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2) 평가방법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하여 각 업무에 활용토록 할 수 있음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관련 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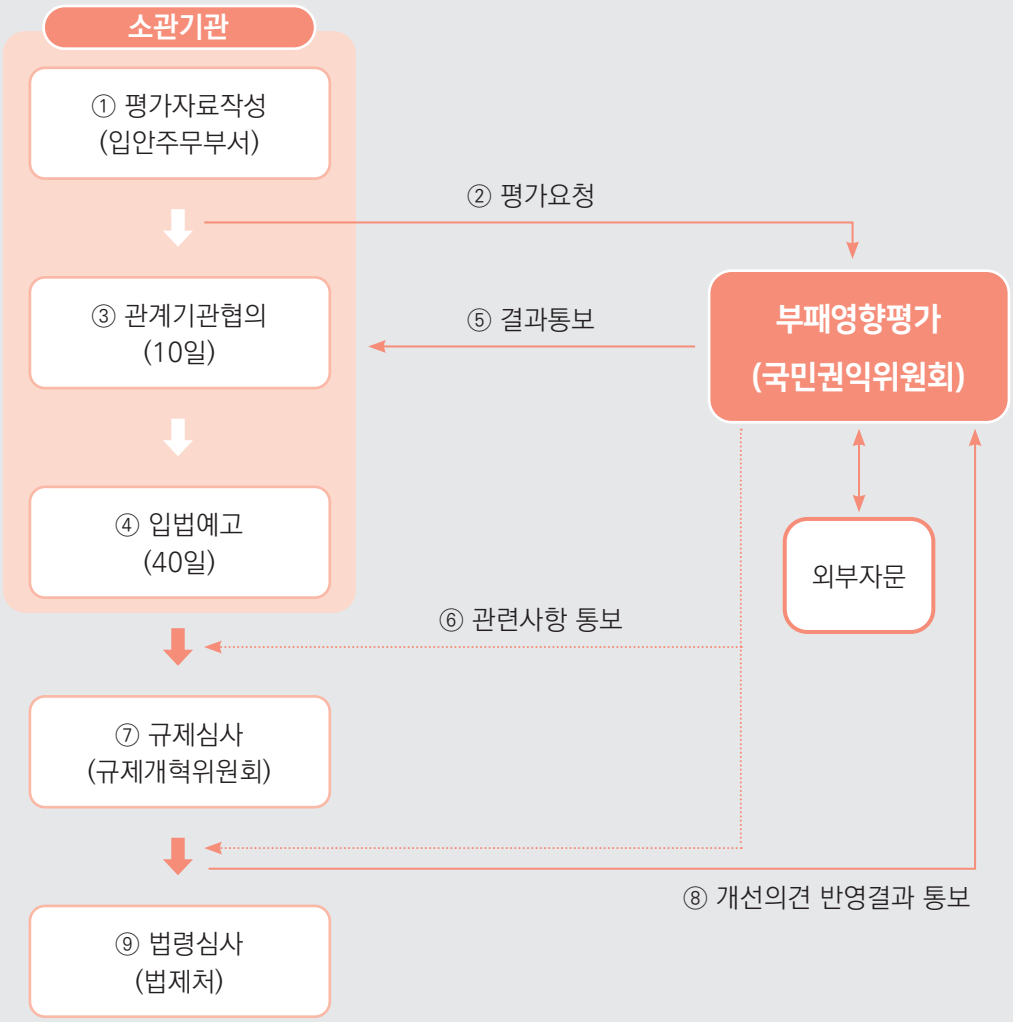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04 2022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 추진성과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보다 신속히 처리

□ 2022년에는 최근 3개년 중 가장 높은 개선권고율 유지

- 1,409개 법령을 평가하고 136개 법령에서 324건 개선권고
- 2019년 대비 개선법령은 20.4%p(전년대비 25.3%p↓), 개선권고율은 12.7%p (전년대비 동일) 증가

□ 평가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소요기간 지속 단축

- 평균처리기간은 7.3일로 기존 최단기간인 전년(9.2일) 대비 1.9일 앞당김

평가법령 및 개선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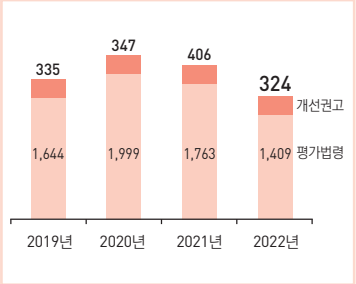

개선권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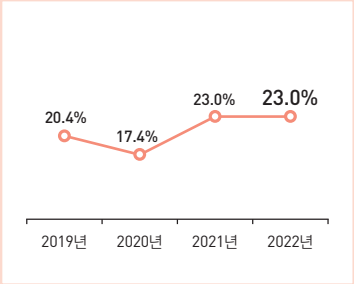

평균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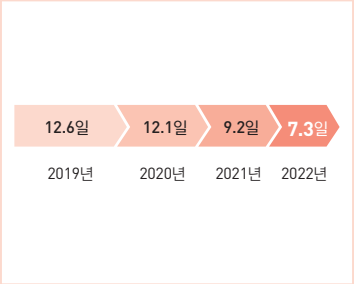

법령을 대거 정비하여 부패발생 근본요인 제거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95개, 69.9%)이 가장 많고, 총리령·부령(35개, 25.7%), 법률(5개, 3.7%) 등 순임
- (법령분야별) 산업개발(31개, 22.8%)과 일반행정(27개, 19.9%), 교육문화(21개, 15.4%)가 전체의 58.1%를 차지
- (평가기준별)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에 따른 권고(140건, 43.2%) 최다

공공 및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부패유발제도 개선

- 공무원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행위를 확대해 부패방지체계 강화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변경기준을 공개하여 행정 투명성 강화
- 도서관자료 납본자에 대한 보상청구 사전 안내 의무화로 소극행정 예방

2. 평가실적 세부현황

접수

- 2022년에는 1,449개 제·개정법령에 대한 평가가 접수되어, 전년(1,754개) 대비 17.4% 감소
-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 49.4%인 716개로 가장 많았음

  ※ 대통령령 716개(49.4%) → 총리령·부령 597개(41.2%) → 법률 134개(9.3%)

제·개정법령 접수 현황 (2006. 4. ~ 2022.)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전체기간 ('06. 4. ~ '22.)	25,778(100)	4,420(17.2)	11,677(45.3)	9,543(37.0)	138(0.5)
'19년	1,654(100)	132(8.0)	822(49.7)	692(41.8)	8(0.5)
'20년	1,965(100)	333(16.9)	904(46.0)	722(36.8)	6(0.3)
'21년	1,754(100)	134(7.6)	916(52.2)	704(40.2)	-
'22년	1,449(100)	134(9.3)	716(49.4)	597(41.2)	2(0.1)

개선권고

□ 1,409개* 법령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324건 개선권고

- 평가법령은 최근 3개년 평균(1,802건) 대비 21.8%p(1,409개) 감소했고, 개선권고율은 최근 3개년 평균(20.3%) 대비 2.7%p(23.0%) 증가
- 개선권고율은 증가추세를 유지(2019년 대비 12.7%p 증가, 전년과 동일)

* 2021년 말에 접수되어 2022년으로 이월된 법령(40개) 포함, 2022년 말에 접수되어 2023년으로 이월된 법령(14개) 제외

개선권고 현황 ('06. 4 .~ '22.)

(단위 : 개, %)

구분	전체기간 ('06. 4. ~ '21)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 (전년대비)
평가법령	24,304	1,644	1,999	1,763	1,409	20.1 ↓
개선법령	2,764	113	169	182	136	25.3 ↓
개선권고	6,633	335	347	406	324	20.2 ↓
개선권고율	27.3	20.4	17.4	23.0	23.0	-

처리기간

-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7.3일로 전년 대비 1.9일(전체기간 평균 대비 6.1일) 단축
  - 개선법령은 전년 대비 0.7일(전체기간 평균 대비 7일)을 단축하여 평균 14.8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

- 2006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신속하게 평가

부패영향평가 처리기간 (2006. 4 . ~ 2022.)

(단위 : 개, 일)

구분	전체 평가법령		개선법령		원안법령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전체기간 ('06. 4. ~ '22.)	25,713	13.4	2,900	21.8	22,813	12.3
'19년	1,644	12.6	113	16.3	1,531	12.4
'20년	1,999	12.1	169	20.9	1,830	11.3
'21년	1,763	9.2	182	15.5	1,581	8.5
'22년	1,409	7.3	136	14.8	1,273	6.5

개선법령

① 법령 종류별

- 1,409개 평가법령 중 136개 법령에서 개선사항 발굴

- 136개 개선법령 중 대통령령이 69.9%인 95개로 가장 많았고, 총리령·부령(35개, 25.7%), 법률(5개, 3.7%) 순이었음

- 평가법령 대비 개선법령 비율은 대통령령(13.6%), 총리령·부령(6.1%) 순으로 나타나, 법률 위임사항이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개선율이 높게 나옴

법령 종류별 개선법령 (2006. 4. ~ 2022.)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전체기간 ('06. 4. ~ '22.)	계	25,713	4,418(100)	11,653(100)	9,500(100)	142(100)
	개선법령	2,900	691(15.6)	1,447(12.4)	731(7.7)	31(21.8)
	원안법령	22,813	3,727(84.4)	10,206(87.6)	8,769(92.3)	111(78.2)
'19년	계	1,644	132(100)	827(100)	678(100)	7(100)
	개선법령	113	12(9.1)	75(9.1)	24(3.5)	2(28.6)
	원안법령	1,531	120(90.9)	752(90.9)	654(96.5)	5(71.4)
'20년	계	1,999	336(100)	916(100)	740(100)	7(100)
	개선법령	169	23(6.8)	106(11.6)	40(5.4)	-
	원안법령	1,830	313(93.2)	810(88.4)	700(94.6)	7(100)
'21년	계	1,763	136(100)	920(100)	707(100)	-
	개선법령	182	18(13.2)	116(12.6)	48(6.8)	-
	원안법령	1,581	118(86.8)	804(87.4)	659(98.2)	-
'22년	계	1,409	131(100)	701(100)	575(100)	2(100)
	개선법령	136	5(1.5)	95(13.6)	35(6.1)	1(50)
	원안법령	1,273	126(98.5)	606(86.4)	540(93.9)	1(50)

② 법령 분야별

- 법령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22.8%(31개), 일반행정 19.9%(27개), 교육문화 15.4%(21개) 분야가 전체의 58.1%를 차지

  - 선박·교통·건축물, 안전·문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 개선이 많았음

- 산업개발 분야는 해수부(11개), 국토부(9개), 농식품부(5개) 등의 소관 법령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개선법령 비율: (2019년) 37.2% → (2020년) 31.4% → (2021년) 21.4% → (2022년) 22.8%

- 일반행정 분야는 고용부(8개), 행안부(7개), 해경·소방청(각 3개) 등 소관 법령이며, 고용안정, 재난·재해·안전 관련 법령의 개선이 많았음

- 교육문화 분야는 문체부(12개), 교육부(6개), 문화재청(3개) 소관 법령으로, 스포츠·공연 등 문화 관련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짐

※ 문화 관련 개선법령 : (2019년) 6개 → (2020년) 9개 → (2021년) 8개 → (2022년) 15개

법령 분야별 개선법령 (2006. 4. ~ 2022.)

(단위 : 개, %)

구분		계	일반행정	교육문화	국방보훈	재정경제	산업개발	과학정보	환경보건	형사사법	기타
전체기간 ('06. 4. ~ '22.)	평가법령	22,305	4,144	2,521	1,419	2,371	6,029	875	4,009	845	92
		(100)	(18.6)	(11.3)	(6.4)	(10.6)	(27.0)	(3.9)	(18.0)	(3.8)	(0.4)
	개선법령	2,595	378	331	138	189	787	137	567	61	7
		(100)	(14.6)	(12.8)	(5.3)	(7.3)	(30.3)	(5.3)	(21.8)	(2.4)	(0.3)
'19년	평가법령	1,644	221	181	102	175	472	53	372	64	4
		(100)	(13.4)	(11.0)	(6.2)	(10.6)	(28.7)	(3.2)	(22.6)	(3.9)	(0.2)
	개선법령	113	12	15	-	5	42	6	26	7	-
		(100)	(10.6)	(13.3)	-	(4.4)	(37.2)	(5.3)	(23.0)	(6.2)	-
'20년	평가법령	1,999	324	177	127	208	663	63	322	114	1
		(100.0)	(16.2)	(8.9)	(6.4)	(10.4)	(33.2)	(3.2)	(16.1)	(5.7)	(0.1)
	개선법령	169	34	17	14	11	53	4	24	12	0
		(100.0)	(20.1)	(10.1)	(8.3)	(6.5)	(31.4)	(2.4)	(14.2)	(7.1)	(0.0)
'21년	평가법령	1,763	298	171	146	148	552	38	332	78	-
		(100)	(16.9)	(9.7)	(8.3)	(8.4)	(31.3)	(2.2)	(18.8)	(4.4)	-
	개선법령	182	38	22	11	15	39	2	54	1	-
		(100)	(20.9)	(12.1)	(6.0)	(8.2)	(21.4)	(1.1)	(29.7)	(0.5)	-
'22년	평가법령	1,409	238	122	88	155	429	57	245	75	-
		(100)	(16.9)	(8.7)	(6.2)	(11.0)	(30.5)	(4.0)	(17.4)	(5.3)	-
	개선법령	136	27	21	5	19	31	14	14	5	-
		(100)	(19.9)	(15.4)	(3.7)	(13.9)	(22.8)	(10.3)	(10.3)	(3.7)	-

기관별 현황

- (평가의뢰)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의뢰 상위부처는 국토부(170개)였고, 다음으로 기재부(119개), 행안부(91개) 순으로 나타났음

- (개선법령) 과기부가 14개로 개선법령 수가 가장 많았고, 문체부(12개), 해수부(11개)가 그 뒤를 차지

- (개선권고) 문체부가 43건으로 개선권고가 가장 많았고, 과기부(38건), 기재부(34건) 순

평가의뢰 기관별 현황 (2022년)

(단위 : 개, 건, %)

구분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개선법령	개선권고	원안법령
계	1,449	1,409(100)	136(9.7)	324	1,273(90.3)
1. 문화체육관광부	52	48(100)	12(25.0)	43	36(75.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	56(100)	14(25.0)	38	42(75.0)
3. 기획재정부	119	119(100)	10(8.4)	34	109(91.6)
4. 행정안전부	91	91(100)	7(7.7)	19	84(92.3)
5. 해양수산부	80	80(100)	11(13.8)	16	69(86.23)
6. 국토교통부	170	169(100)	9(5.3)	15	160(94.7)
7. 문화재청	15	15(100)	3(20.0)	15	12(80.0)
기타(보건복지부 등 34개 기관)	866	831(100)	70(8.4)	144	761(91.6)

평가기준별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에 따른 권고가 140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예측가능성(63건, 19.5%), 이해충돌가능성(55건, 17.0%) 순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은 과태료·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침익적 처분기준의 구체화 등으로 전년(78건) 대비 79.5%가 증가

- 예측가능성은 위임규정의 구체성·공개성 확보 등에 관한 개선

- 이해충돌가능성은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127건) 대비 56.7%가 감소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고 공정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개선권고하도록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개선권고 감소

- 2020년에 신규 도입된 소극행정유발 가능성 기준에 따른 개선권고는 5건으로 2021년 이후 개선사항 꾸준히 발굴

평가의뢰기관별 평가현황 (2022년)

(단위 : 건, %)

분야	평가기준	'19년	'20년	'21년	'22년
계		335(100)	347(100)	406(100)	324(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8(2.4)	-	3(0.7)	2(0.6)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54(16.1)	18(5.2)	34(8.4)	16(5.0)
	③ 특혜발생 가능성	7(2.1)	2(0.6)	2(0.5)	4(1.2)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01(30.1)	73(21.0)	78(19.2)	140(43.2)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7(5.1)	14(4.0)	21(5.2)	11(3.4)
	⑥ 재정누수 가능성	4(1.2)	-	2(0.5)	3(0.9)
행정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23(6.9)	21(6.1)	21(5.2)	3(0.9)
	⑧ 공개성	22(6.6)	23(6.6)	24(5.9)	17(5.3)
	⑨ 예측가능성	24(7.2)	89(25.6)	82(20.2)	63(19.5)
부패통제	⑩ 이해충돌 가능성	67(20.0)	102(29.4)	127(31.3)	55(17.0)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8(2.4)	5(1.4)	6(1.5)	5(1.5)
	⑫ 소극행정유발 가능성	-	-	6(1.5)	5(1.5)

Ⅱ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2) 집행
   3) 행정절차
   4) 부패통제

01 평가기준별 사례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개 요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 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사례 01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지정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의 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및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생 략)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령안은 지정된 뇌은행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뇌은행의 지정취소 등 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뇌은행의 지정 기준 지속 여부와 뇌연구자원의 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문제점

- 뇌은행의 지정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유발 및 예측가능성 저하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처분자의 과도한 부담이 유발될 수 있고, 처분기준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불분명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일을 적발일이 아닌 처분일로 하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는 가중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일을 늦추기위한 부정 청탁을 시도하려는 등 부패 발생 우려

※ 2·3·4차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의 기준일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인지 '처분을 한 날' 인지가 불분명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 처분 가능성 존재

문제 상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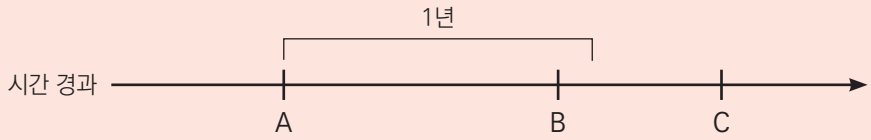

A : 최초 행정처분 한 날(1차 처분일)
B :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2차 위반행위 적발일)
C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날(2차 처분일)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가중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1차 부과처분일(A) 이후 2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시점이 '적발일'(B)인지 '처분일'(C)인지에 따라 가중처분의 유무가 결정됨 → 1년 이내에 2차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1년이 지난 후 2차 처분을 받게 되면 가중처분을 회피할 수 있음

➲ 위반차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관련 규정 미비로 과도한 재량권 허용 및 예측 가능성 저하

-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 내용을 차등 적용해야 함에도 적용 차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이 발생하고 피처분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뇌은행 지정기준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처분기준에 대한 내용 신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내용이 없어, 이해관계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규정

- 위반횟수 산정의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
  - 재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일을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처분기준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위반에 대한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규정 신설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을 명확히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28호, 2022. 6. 28., 일부개정]

[별표]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제16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인지는 제2호 각 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사례 0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3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 현금
2.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

④ 제2항 각 호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기관은 수수료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현행 현금, 수입인지 등으로 납부 하도록 규정한 수리기술자 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수납기관은 신용카드를 통한 수수료 납부자로부터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납부대행수수료의 금액 등에 대한 구체성 부족
  - 개정령안은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납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수납기관이 임의로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부대행수수료가 과도하게 설정되는 등의 우려가 있음

※ 국민이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필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총 8가지이며, 현재 제도 운영 상 중 수탁기관인 시·도지사 등이 수납기관인 경우(6가지)에는 국민이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지방세입에 해당하여 카드사 부담 등)
- 개정령안을 따를 경우 문화재청이 수납기관인 경우(2가지)에만 납부대행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바,
- 수수료 납부자간의 형평성, 수수료 수납 금액·건수 등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 예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아닌 행정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지 정책적 검토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납부대행수수료를 수납기관이 임의적·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행정청이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마련

  ※ 국민(납부자)에게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삭제

개선결과

- 수수료 수납기관 위탁규정인 제2항의 삭제로 인하여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조문 자동삭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7.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 요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검토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평가

평가내용

-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규정·내용을 검토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 방법은 없는가?	

사례 0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처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그리고 순환경제중요성의 강조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주요 개정내용

◈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23조의2, 제23조의 3 및 [별표 1])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

  *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자원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

◈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생태산업단지가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기업 간에 부산물 · 폐열 등을 교환 및 재활용하는 산업

문제점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일 경우 가중사유 부존재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각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일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 및 제재 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 내용 및 제재 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할 가능성 있고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중 사유가 결정될 수 있는 등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이 있음

➲ 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가중 규정 부존재

- 가중 및 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가중과 감경을 함께 규정하여야 함*에도 가중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적용 관련 예측가능성 저하

*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장 실체 규정 p.189

과징금의 가중·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함께 규정하며,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어도 과징금액의 경우 법률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행위에 대한 둘 이상의 처분이 업무정지일 경우 가중사유 규정
- 가중 기준을 감경 기준과 같이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1호, 2022. 4. 20., 일부개정]

[별표 1]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2조의제3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승인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가입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승인취소 사유, 해지방법 등에 대한 통지
2. 승인 받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 후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선택한 운용방법으로 이전
4. 제3호에 따른 적립금 이전 시 변경된 운용방법의 정보를 제13조의2를 준용하여 가입자에게 제공
5. 승인취소로 인한 해지 수수료 등 가입자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 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이전 운용방법에 대한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전 운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승인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개정령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승인 취소 후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운용내용
   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용유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제점

- 심의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승인취소 사유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당연취소사유가 아닌 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제재규정의 적정성에 어긋남

- 사전지정운용제도 설정 승인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행정청의 임의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어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승인취소 사유 중 중대한 위법행위를 당연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제재규정의 적정성 확보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6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사례 0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3]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자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에 대한 정부의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보안인증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령안은 「클라우드딩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8738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 법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23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위반차수 산정을 위한 회차 적용 기준 미비

-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내용을 차등 적용해야 함에도 적용 차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이 발생하고 피처분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 법 제23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위반행위가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게 하여 과도한 재량권 남용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에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시행령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충·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행 담당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차수 산정 기준 규정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을 명확히 규정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취소 사유에 대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0호, 2023. 1. 10., 일부개정]

[별표 3]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의12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 략)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자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 횟수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평가내용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 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 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 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사례 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 있는 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가 있는 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저장소·판매소가 있는 장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이 있는 장소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심의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5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2.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개선
3.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가스 등 화재안전용품의 제공 및 안전시설의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제11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자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
  - 위원으로 위촉된 후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나 직무태만 등의 사실이 발견된 부적격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 침해 우려 있음

- (제16조제2항)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정의 구체성, 명확성이 부족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
  -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1~3호 외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시행령 제정안 제16조제2항에서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으나
  - 국민에게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에도 가연성·폭발성 물질이 무엇이며 그 물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소방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법령 집행 가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 (제24조) 심의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미흡

- 심의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 부재

➲ (제25조제1항 및 제3항)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및 법령 집행 우려 있음

- 시행령 제정안 제25조제1항의 제1~5호를 통해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의 지원대상인 화재안전취약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선정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6호에는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화재안전취약자를 소방관서장이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 제25조제3항에서 '제1~2항 외에 지원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지원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11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촉근거 마련

- (제16조)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금지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이해가 쉽게 각 호 등으로 규정하여 화재 예방조치 명확화

- (제24조) 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제척) 심의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운영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
  - (기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 (회피) 위원이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조사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 (제25조) 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화재안전취약자의 기준과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3.] [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사례 0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4]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1. 조직 :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또는 재난안전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인력 :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또는 재난안전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또는 재난안전기술·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개발 :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
   나.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또는 재난안전기술·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
   다.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또는 재난안전기술·제품의 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또는 재난안전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3. 시설 : 전용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공간·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재난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 1. 5. 시행)되어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과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창업 관련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창업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경영 등의 컨설팅
2.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진흥시설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의 지원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으로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창업 지원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창업기업확인서

제15조(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화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된 경우,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화 지원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문제점

-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받는 대상 선정에 필요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정 심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명확하고 엄격해야 하나,
  - 제정안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특정기관이나 단체에게 특혜 발생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고시

평가대상 조문	개선의견
[별표 4]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1. 조직 :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또는 재난안전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별표 4]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1. 조직 :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또는 재난안전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선결과

➲ 현행법령에 제정령안 제15조제6항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두지않기로 제정되었으므로, 해당 지정기준 전부가 삭제됨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 요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 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례 0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령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문제점

- 과태료 감경(면제) 및 가중사유의 구체성 미흡
  - 개정령안은 과태료 감경(면제) 및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가중 등이 결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태료 감경(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 8. 31.,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 략)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 생략 〉

② ~ ③ 생략

④ 영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말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령안은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2항 2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규정함
  -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2.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③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점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이 모호하여 담당자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시설을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만 규정하여 최소한의 판단 기준 미비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등록요건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1호, 2022. 6. 29., 전부개정]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④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 등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례 03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1조(납부 독촉)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1조의 납부독촉을 2회 및 납부독촉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독촉할 수 있는 규정 추가

- 벌과금 납부독촉을 2차에 나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소 불명 등으로 벌과금 납부독촉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 납부를 독촉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주소불명 등 실질적인 독촉이 어려운 경우의 2차 독촉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 법령 개정으로 벌과금 납부를 2차례에 걸쳐 독촉하도록 추가하고도 주소불명 등 실질적인 독촉이 어려운 경우 독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인 벌과금 미납자의 기억상기 효과 및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감소 효과 저해
  -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관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할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주소불명 등 실질적인 독촉이 어려운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2차 독촉 시 공시송달의 구체적인 방법(매체)을 정할 필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 4. 27.] [국방부령 제1116호, 2023. 4. 27., 일부개정]

제11조(납부 독촉)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독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사례 0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람 또는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에 설치하고 있음

-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지역심의위원위 위원 구성 (시행령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1]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문제점

-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결정을 심의하는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소음 분야 관련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관련 개정문을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라고 명시하고 있어, 지역내 특정 이익단체의 영향으로 소음 분야와 무관한 전문가가 불필요하게 위원으로 위촉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주민 추천 위원을 소음 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1) **시행령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503호, 2023. 6. 7., 일부개정]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0조제1항제2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사례 05 국가공무원법

평가대상 조문

제17조의3(부패·공익신고자등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 신상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법 제17조의3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 신설 조항과 관련하여, 부패·공익신고자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의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점

-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설 조문 제17조의3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는 사유를 신고자의 "신고"만을 명시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의 범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사유보다 제한적임

- 또한, 신고자 비밀준수를 위해 신고자 본인 동의 없이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는 정보를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 신상*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상"이라는 용어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임

  * 신상 :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형편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 부패·공익신고 등의 신고에서 공개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할 신고자의 정보는 "신고사실과 관련하여 누군가를 어떤 신고의 신고자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임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17조의3 제1항의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범위를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 으로 개선

- 제17조의3 제2항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는 대상을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 공무원이 신고자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로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개 요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위탁·대행'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 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평가방법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수탁기관이 재위탁 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사례 01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 수·회원 수·지도자 수·운영 종목·사용시설·매출액·종사자·자원봉사자 수 등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 회원의 성별·나이·종목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의 법위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제점

- 상위 법령인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실태조사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규칙 제정안은 실태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정안과 상이한 내용의 규정으로 실태조사 업무와 관련한 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저하 우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9호가목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신청 서류 접수·심사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3. 법 제17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실태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실태조사 규정을 상위 법령인 시행령 제정안에 부합하도록 개정
  -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주체를 대한체육회로 변경 등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3호, 2022. 6. 16., 제정]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 ② (생 략)

③ 대한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례 02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중 관할 행정구역 내 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법 제25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한 사항 규정함
  - 실태조사 중 일부는 지자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체육인 복지법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문제점

➲ 위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구체성 미흡

- 법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나,
- 시행령에서 또 다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사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 위임 위탁의 투명성 저하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탁 사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강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8. 11.] [대통령령 제32863호, 2022. 8. 9., 제정]

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복지후생금 지급
2.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에 대한 지원의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3.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신청 접수 및 보상금 지급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의 접수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

사례 0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조의24(수수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별표 2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조의2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인정취소인 경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인정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2호	인정 취소			
마.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5호	인정 취소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8.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1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문제점

-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이 법률과 상충되어 감경권한의 남용 가능
  - 법률 제32조의3제1항에는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을 당연취소하도록 규정
  - 개정령안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그 처분이 인정취소인 경우 6개월의 인정정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 제32조의3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만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당연취소 대상인 증명서 등의 불법대여를 시행규칙에서 인정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 고의로 증명서 등을 불법대여한 후 감경을 위한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부패를 유발할 소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수수료) 제2조의24에서 교통영향평가협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2조의2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으로 규정

- (행정처분의 감경) 별표2의2에서 일반기준 중 인정취소의 처분을 6개월의 인정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법률제32조의3제1항의 제5호*를 추가

  * 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5.] [국토교통부령 제1206호, 2023. 4. 25., 일부개정]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별표 2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5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인정취소인 경우(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인정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3조의4(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업무
2.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업무
3.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관련 조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령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업무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거쳐야하며,
- 지정취소·업무정지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문제점

➲ 청문 권한에 대한 위탁 규정 부재로 위탁의 책임성·투명성 저하 우려

- 개정령안은 지정취소 등의 처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명시적으로 위탁하고 있으나 청문은 별도 위탁 규정이 없어,
- 청문의 주체가 장관인지 위탁받은 기관인지 불분명하고, 사안에 따라 청문의 주체가 장관 또는 위탁기관으로 달라질 우려가 있음
- 실제 청문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면 청문의 위탁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성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강화 필요

인허가 취소, 철거·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하는 청문도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권한 위임 관련 조항에 청문에 관한 권한 위임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021 법령안 입안심사 기준' 481쪽, 법제처)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처분의 위탁과 함께 청문 권한의 위탁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3.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50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

(3) 재정누수 가능성

개 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 유발요인을 평가

평가방법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검토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 취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 규정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 제도와 비교할 때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목적외 사용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환수 또는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등)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사례 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의2(장애인 근로자 지원 대상·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고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할 때 중증장애인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종류, 구입 및 대여 방식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① ~ ② (생략)

③ 고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할 때 중증장애인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종류, 구입 및 대여 방식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재정누수가능성, 예측가능성

현황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에 따라 시행령 정비

문제점

-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장애인 근로자 등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재정누수 가능성 존재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종류, 구입 및 대여 방식 등을 행정청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재정 낭비 초래 우려

-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및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지원 대상이 되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종류 및 융자,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지원 신청 시 혼란 가중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절차를 이해관계인이 예측가능 하도록 행정규칙인 고시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률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 능력
5. 삭제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지원 절차,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호, 2023. 1. 1., 일부개정.]

제20조(지원대상자)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지원범위 및 한도 등)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한도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 한다.)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기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야 하며, 동 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례 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①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로 된 기탁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본인 여부
2. 주소지 확인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여부
3. 기부하려는 금액 및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기부금액
4. 답례품에 관한 사항(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 ⑥ (생략)

제6조(답례품의 한도)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연도 개인별 기부 금액 총액의 100분의 30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가액의 산정은 기부자가 기부하는 당시의 취득 시가(時價)에 따른다.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에게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예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을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도록 법률이 제정(2021. 10. 19.) 됨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 총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금의 답례품을 해당 기부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모금 금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홍보비, 배송비, 기타 운영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려고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은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 기금에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어느 경우에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별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본문과 단서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리·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한은 전년도 기부 금액의 100분의 15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별도의 예산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재량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한 선심성 및 방만한 지방재정 낭비 우려

➲ 법률(제9조제1항)에서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액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제6조)에서는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100분의 30이내로 정하여 명확한 '한도' 설정이 아닌 '범위'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불명확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 남용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❶ 답례품 제공을 위한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우선 지급되도록 기금 및 예산 사용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반영

- 고향사랑기금 우선 사용 후 예산사용

◈ 법률에서는 모집·운용비용을 전년도 기부금액 총액의 15%로 설정하고 있고, 시행령 에서는 답례품 비용을 개인별 기부금의 30%로 설정하고 있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의 입법취지와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시행령상 답례품 비용의 상한을 운용상황을 보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필요

❷ 답례품 제공을 위한 비용 등을 해당 지자체의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충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례로 정하여 투명성 확보

- 예산 사용 및 제한기준, 용도 등의 내용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

❸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가액범위 한도를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100분의 30"으로 명확하게 규정

❹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시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❶, ❸, ❹는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되고, ❷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됨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3. 6. 27.〉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 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 부 금 액	금 원 (₩)	
기 부 대 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답 례 품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 [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 [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귀하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가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160g/㎡)

[대표예시]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994호, 2022. 12. 14., 제정]

광주광역시(자치행정과)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사례 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4의2]

정보보호 취약점에 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제55조의6제1항 관련)

1.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가.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신규 정보보호 취약점으로서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취약점으로 한다.

다. 포상금액

포상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2. 포상금 지급 절차

가. 1호 나목의 정보보호 취약점의 인정

1) 1호 나목의 신고 대상 정보보호 취약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기본 정보는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1)에 따른 판단 결과 1호 나목의 신고 대상 정보보호 취약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료한다.

나. 포상금 결정

가목에 따라 인정된 정보보호 취약점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및 정도, 취약점 악용의 용이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3. 포상금 지급 취소 기준

가. 신고한 정보보호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사유로 정보보호 취약점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한 경우

다.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하여 이미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마.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기준

- 재정누수가능성,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령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2022. 12. 11. 시행)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문제점

- 포상금의 환수에 대한 규정 불명확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경우 지급 취소가 아닌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급 취소' 기준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환수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결과 초래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포상금의 환수를 위한 근거 규정 명확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2호, 2023. 7. 3., 일부개정]

[별표 4의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제55조의6제1항 관련)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하 "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지급 기준
      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포상금의 지급 절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포상금의 환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신고한 정보보호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취약점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한 경우
   다.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포상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개 요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방법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도서관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0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① ~ ④ (생 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서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현황

-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시행되고 운영평가를 각 등록관청별로 시행하는바,
  -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결과 및 등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공공도서관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문제점

- 운영평가 결과, 관리·운영 현황 등에 대한 공개 규정 불분명
  - 개정령안은 평가 결과 및 현황 등의 공개 방법이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 행정청이 임의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공개규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운영평가 결과 및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전부개정]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① 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사례 0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3조(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 ③ (생 략)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7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 ③ (생 략)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 ③ (생 략)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현황

-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 곤란
  -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시행령 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국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어디에 공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고방식을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제13조, 제17조, 제19조)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8호, 2023. 6. 7., 전부개정]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③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③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생 략)

제17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공개성

개 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 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평가방법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②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지정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7. 〈 생 략 〉

평가기준

- 공개성, 예측 가능성, 접근의 용이성

현황

-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은 지정을 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함
  -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청에 갱신을 신청토록 정함
  -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문제점

-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한 사전안내 규정 부재
  -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90일 전까지 행정청에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해당 기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국민이 피해를 입을 우려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공개규정 미흡
  -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스포츠클럽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 회원 및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나,
  - 해당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저하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유효기간 갱신 전 사전 안내 규정 마련

-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700호, 2022. 6. 15., 제정]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 ⑤ (생 략)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여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개정령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실시 공고에 관한 업무의 수행 주체를 국시원으로 하고,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와 자격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사항의 내용을 규정하려고 함

문제점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고장소 등 부재
  - 국시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시험예정일, 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실시 직전 연도의 12월31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자격시험을 실시할때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한 등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련정보를 그 어디에 공고한다는 내용이 없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① 시험예정일 등 개략적인 사항 또는 ②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을 이해관계자가 어디에 공고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개선
  - 공고하는 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추가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19호, 2022. 11. 22., 일부개정]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사례 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

-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분권 행정체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 법 제7조 외 20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주체의 범위에 명확성을 부여하려고 함

문제점

-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공고장소 등 부재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 장소, 종류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관련정보를 그 어디에 공고한다는 내용이 없어 수요자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예방접종의 일시, 장소, 종류 등을 수요자가 어디에 공고하는지 쉽게 알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 공고하는 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추가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700호, 2022. 6. 15., 제정]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예측 가능성

개 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평가방법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사례 0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특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현황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 "부득이한 사유"는 해석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

※ 입법례를 살펴보면,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여, 해석의 범위를 좁히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입법례 참고

①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민법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천재 기타 사변'으로 규정하여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천재나 그 밖의 큰 사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담보 등) ⑦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 '천재재변 또는 재해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

③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법률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명확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④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 돼지축산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형식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 "----------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시 등 하위 법에서 규정토록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선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전부개정]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정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례 0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위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1조제1호,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별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8조 관련)

3. 제1호나목·다목 및 사목에 따른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 산정방법, 영농 종사기간의 확인,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확인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별표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6조 관련)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기준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현황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1. 30. 제정,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제정안 제13조에서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관해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 [별표1]에서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별표2]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별표5]에서는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들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문제점

- 공익직접지불금,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수령에 대한 예측 가능성 미흡
  - 각 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수령을 위한 세부사항을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고시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나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량권 행사 및 예측 가능성 침해 우려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각 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수령을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구체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1.] [대통령령 제32912호, 2022. 9. 20., 제정]

제1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산불·산사태·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림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8조 관련)

1.~ 2 (현행과 동일)
3. 제1호나목에 따른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 산정방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의 확인방법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확인방법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6조 관련)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가. ~ 파. (현행과 동일)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3

사립학교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4조의2(학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① 법 제31조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이라 한다)이란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학교법인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학교법인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회계연도 중 두 번째 회계연도 및 그 직후 3개 회계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감사인 중 지정기준일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 감사인을 지정회계감사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⑤ ~ ⑬ (생 략)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학교법인 지정외부감사 도입에 따라 대상 학교법인의 선정,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등을 정함
  -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이 외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문제점

-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 등에 있어 예측가능성 미흡
  - 대상 학교법인의 선정, 선정 된 학교법인이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등을 각 항별로 정하고 있으나,
  - 각 규정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등의 문구로 인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외부감사 관련 사항이 달리 결정될 우려가 있음
  - 감사와 관련한 사항 등은 공정성·투명성 등이 중요한바, 하위 규정이나, 고시 등의 방법으로 객관성 확보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 등으로 정하여 객관성 확보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② ~ ⑮ (생 략)

⑯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88조의4(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절차)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침구·생활용품·음식물 등의 구체적 제공범위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송환대상외국인이 제88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발생한 숙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귀책사유 있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지출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관리한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출국 등으로 관리가 종료된 때에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지출금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의 세부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출비용의 청구, 납부고지서 발급 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령안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신설(2021. 8. 17. 개정, 2022. 8. 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출국대기실 관리비용 부담 범위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마련

***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송환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등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1. 제7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이 된 경우

☑ 문제점

➲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침구·생활용품·음식물 등의 구체적 제공범위 및 귀책사유 있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행정청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시행령안 제88조의4제6항의 경우에도 제3항 후단에 따르도록 규정

➲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67조의3제1항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출국 등으로 관리가 종료할 때까지 필요한 침구·생활용품·음식물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구체적 제공범위는 영 제88조의4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구체적 제공범위 및 귀책사유 있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고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① 국가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으로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1. 침구
2. 생활용품
3. 음식물
4. 그 밖에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 및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비용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서 퇴실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1. 납부자 이름
2. 관리비용 청구사유
3.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6. 미납 시 조치 예정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각 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법무부고시 제2023-214호, 2023. 5. 15. 제정)

1. 침구
   가.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이하 '청장등'이라 함)은 출국대기실 입실외국인에게 담요, 베개를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베개는 전염병 확산 우려 등 기타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베개의 크기는 가로 25cm, 9cm 세로 이상으로 하며 면 또는 인조가죽 재질로 한다.

나. 1인당 담요 1장, 베개 1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담요의 경우 입실외국인의 요청 시 1장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을 마친 침구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생활용품

가.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에게 수건·칫솔·치약·비누·샴푸·화장지·위생용품, 그 밖에 출국대기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청장등은 가항에 따라 지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용품이 낭비되거나 출국대기실 내 질서유지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음식물

가.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하루 세 차례 제공하여야 한다(아침 7:00~9:00, 점심 11:00~13:00, 저녁 17:00~19:00).

나. 가항에 따른 음식물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실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청장등은 환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2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그 밖의 물품

가. 청장등은 필요시 입실외국인에게 구급약품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신청한 물품 중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않는 물품을 대여 및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시행일 : 2023. 5. 15.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개 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사례 0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협의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협의체장 선출 전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제정안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체장 임기를 규정함

문제점

- 협의체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부재
  - 협의체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으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부패발생이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역상생협의체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8.] [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제정]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례 02

교육공무원 징계령

평가대상 조문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 개정령안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퇴직 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령을 정비함

☑ 문제점

➲ 징계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미흡

-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해촉 규정이 미흡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등이 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해촉 사유 보완

➲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피 규정 마련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징계등 혐의자이거나 징계등 혐의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징계등 혐의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위원이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사례 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지명하는 6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12명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령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분	내 용
위원 수 (법 제10조제4항)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민·관 위원
위원장 및 위원위촉 (법 제10조제5항, 영 제8조제1항)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위촉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지명하는 6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12명
위원의 해촉 (제8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해촉 가능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장치	제척·기피·회피규정 없음

문제점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의 마련 미흡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가 안장되려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성 있음
  -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국립묘지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사례 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법 제21조의2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 경제·경영,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노동, 경제·경영,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소속되어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 관련 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금융상품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령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문제점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사전지정운용제도 설정의 승인 및 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사전심의를 하는 위원회임에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인 회의의 소집권자 등에 관한 규정 미비
- 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촉 규정 미비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심의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와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다수결원칙 반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서 부적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 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평가방법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사례 01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8조(공모전 심사위원회)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각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 심사 및 수상작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판단 및 부정행위자 결정
3. 수상작 결과 공개
4.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공모 내용을 2개 분야 이상으로 나누어 심사할 경우, 분야별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공모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공모전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언, 감정 또는 자문을 한 사항
4. 심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모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공모전 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⑥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해당 공모전이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제정안은 제8조에 따라 공모전 심사[2)]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려고 함

-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수상작 선정, 부정행위자 결정 등 중요사안을 심사·결정하는 기구임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구분	내 용
구성 (제8조 제3항)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위원 (2개 분야 이상으로 나누어 심사할 경우 분야별 3명 이상 구성) • 심사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심의기능 (제2항)	**응모작 심사 및 수상작 선정**, 부정행위의 검증, **판단 및 부정행위자 결정** **수상작 결과 공개**,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기 (제6항)	해당 공모전이 **종료되면 해산**
이해충돌 방지장치 (제5항)	제척사유 명시, 회피규정 명시 ※ 해촉규정 미비, 제척사유 불분명
기타	의사·의결 정족수 미규정

문제점

➲ 의사·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위원회는 수상작 선정, 부정행위자 결정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의사·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아, 위원회 의결 시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

2)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콘테스트 등을 말함

➲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제도 미흡

-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시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을 기피 의결에서 배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피 의결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음

◈ 제척·기피·회피 관련 근거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참고

➲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사유의 구체성 부족

- 심사위원은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등은 심의·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필요

➲ 부적격한 위원의 심의 배제를 위한 해촉규정 부재

- 특정위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비위행위 및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해촉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기피신청 규정 마련

➲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회피사유의 명확화

➲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10.] [대통령령 제32628호, 2022. 5. 9., 제정]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생 략)

사례 0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 ⑦ (생 략)

⑧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평가기준

- 부패방지의 체계성, 재량규정의 구체성·적정성

☑ 현황

➲ 현행 공직자로 구성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은 스포츠 정책(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
-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제한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 규정 없음

☑ 문제점

➲ (위원 자격) 위촉위원의 자격 불명확으로 자의적 구성 가능성

- 개정령안은 위원 자격을 '스포츠 정책(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담당자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지명권자가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하여 상황에 따라 지명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될 우려

➲ (연임 제한) 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부재

- 특정 위원이 장기 연임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탁 등의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행정적 의사 결정 과정의 개방성·민주성 저해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정책위원회, 국제대회실무위원회 모두 적용

➲ 위원의 자격을 관련 전공·분야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신뢰성 제고

-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등의 부패 발생 소지 차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 25.] [대통령령 제33239호, 2023. 1. 25., 일부개정]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스포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나. 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다. 그 밖에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 ④ (생 략)

⑤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5호"는 "제2항제2호"로, "정책위원회"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사례 03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평가대상 조문

제6조(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① 사이버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전략·정책·법령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등 중장기 대책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안보 위해자 및 배후 국가·단체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제출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사이버안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사이버안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동 제정안은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임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공·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운영근거를 마련(안 제6조)
- 사이버안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용도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안 제15조)

문제점

➲ 제6조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해당 위원회는 심의사항의 공공성이 매우 높고 업무에 대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민간전문가와 소속 직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부정청탁 등의 죄를 범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 필요

➲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부재

- 제15조에서 사이버안보에 관한 업무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직무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부패행위 방지 미흡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 및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해 형법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사이버안보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평가대상 조문	개선의견
제6조(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생략)	**제6조(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생략)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개선결과

➲ 현재 법제심사중(재입법 예고)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개 요

-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법령 등에 내재하는 소극행정 유발 요인을 이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상 근거 부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용규정」 제2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

평가방법

- 법령상 근거 부재로 인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의 상·하위 법령을 검토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음에도 하위 법령에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근거 부재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업무해태, 자신 또는 소속기관만을 위한 자의적인 업무처리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소극행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
  - 처리기한 규정,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등 공무원의 업무해태 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반복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상의 근거 부재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불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상 각종 요건 등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8조의3(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4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법 제69조의4의 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기부금품의 접수 상황 및 처리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령안은 국외문화재재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되,
  -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익명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로 지정하였으나, 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 규정 부재
  - 개정령안은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익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없음
  - 근거 규정의 부재로 기부금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용도가 지정된 익명의 기부금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이상(○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처리 절차를 거쳐 용도 외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30호, 2023. 4. 25., 일부개정]

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생 략)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 및 국외문화재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례 0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동 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되,
  -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익명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하였으나, 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 규정 부재
  - 개정령안은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익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없음
  - 근거 규정의 부재로 기부금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부금품을 필요성이 더 높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발생 가능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용도가 지정된 익명의 기부금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기부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국립박물관단지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게시한 후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처리 절차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9. 11.] [대통령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2

III

참고 자료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 관련 법령

0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수요 측면>

0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0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03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집행 <공급 측면>

0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0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 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03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 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 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행정절차 <절차 측면>

01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02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03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부패통제

01 이해충돌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0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0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가 있는가?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공무원의 행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0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0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1)]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절차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측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감독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02 부과·징수 업무[2)]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가중·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체납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03 보조·지원 업무[3)]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공개성)	
관리·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4)]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0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관리·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05 행정조사 업무[5)]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6)]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7)]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감사·감찰기능 등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06 단속·점검 업무[8)]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성의 용이성)	
정보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감사·감찰기능 등	

〈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0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 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 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척·기피·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제기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0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03 관련 법령

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법 률	시 행 령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0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4호
개정 2011. 10.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45호
개정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3호
개정 2013. 6.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8호
개정 2015. 1.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2호
개정 2015. 3.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5호
개정 2015. 11. 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90호
개정 2019. 10. 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81호
개정 2020. 5.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1호
개정 2020. 9.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1호
개정 2020. 11. 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9호
개정 2022. 4. 2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4호
개정 2023. 4. 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제·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연 1회 이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한다.
1. 개선권고를 통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개선권고 내용이 법제처 법령안 심사, 국회 법률안 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
3. 소관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입법을 통해 개선권고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부규정(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소관 기관이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등에 대한 기초자료·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행 법령등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3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 통보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를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부칙 생략

202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2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전 화 | 044-200-7660

홈페이지 | www.acrc.go.kr